

담양군 일반 폐사가축 처리비용 지원 조례안 예고

「담양군 일반 폐사가축 처리비용 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 5. 13.

담양군의회 의장



1. 조례명 : 담양군 일반 폐사가축 처리비용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가.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축사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사육 단계에서 발생하는 일반 폐사가축의 적절한 처리 지원으로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축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다. 폐사가축 발생 시 신속하고 위생적인 처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질병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나. 자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지원대상 및 지원분담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 라. 지원 방법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 마. 부정수급의 환수에 대한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5. 5. 13. ~ 5. 18.(5일간)

5.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 전화 : 061-380-3507~8(FAX 061-380-3590)

라. 의견제출 방법 : 전화, FAX, 직접방문, 우편

6. 조례안 : 붙임

□ 의견제출 서식

의견서		
1. 조례안	담양군 일반 폐사가축 처리비용 지원 조례안	
2. 의견	관련조문	의견
3. 기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5년 5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		

담양군 일반 폐사가축 처리비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사가축의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 환경오염 방지 및 지역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폐사가축"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에 따른 가축전염병이 아닌 원인(노령, 사고 등)으로 폐사한 가축(이하 "폐사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랜더링"이란 폐사가축을 고온 열처리하여 사료, 비료 등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처리 방법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담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폐사가축의 처리를 위하여 소요된 랜더링 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담양군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폐사가축을 랜더링 방식으로 적법하게 처리한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은 소, 사슴, 염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로 한다.

제5조(지원분담율 및 지원한도) ① 일반 폐사가축 처리비용 지원사업의 분담 비율은 보조금 80퍼센트, 자부담 20퍼센트를 원칙으로 한다.

② 보조금은 별표의 폐사가축 처리비용 지원범위 단가 기준으로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농가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폐사가축 처리비용 지원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의사 확인서
2. 세금계산서
3. 처리비용 납부 증빙자료
4. 랜더링 처리확인서

②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①군수는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해 보조사업자에게 사업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보조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부정수급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2.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별표]

폐사가축 처리비용 지원범위(제5조 관련)

구 분		단 가	비 고
소	1년 미만(자우)	300천원 이하	두 당
	1년 초과(성우)	350천원 이하	두 당
사슴	1년 미만(자록)	300천원 이하	두 당
	1년 초과	350천원 이하	두 당
염 소		200천원 이하	두 당
돼 지		200원 이하	kg당
닭, 오리		600원 이하	

※ 시장 가격 변동 시, 별도 고시로 지원 단가 조정 가능

※ 보조금 지급 금액은 기준단가의 80퍼센트

[별지 서식]

폐사가축 처리비용 지원 신청서(제6조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자 (완료)			
신 청 인	농장명				생년월일		
	대표자				연락처		
	주 소						
	농장주소						
신청내역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처리두수				처리비용		
	청구액	일금 원정(₩ 원)					
	랜더링 처리내역						
	가축의 종류 (품종)	성 별	연 령	생체량	개체식별번호	폐사원인 등	비고
	한우/젖소/사슴 염소/돼지/닭/오리	♂암□수	년 개월	kg			
	한우/젖소/사슴 염소/돼지/닭/오리	♂암□수	년 개월	kg			
	한우/젖소/사슴 염소/돼지/닭/오리	♂암□수	년 개월	kg			
	한우/젖소/사슴 염소/돼지/닭/오리	♂암□수	년 개월	kg			
	한우/젖소/사슴 염소/돼지/닭/오리	♂암□수	년 개월	kg			
	한우/젖소/사슴 염소/돼지/닭/오리	♂암□수	년 개월	kg			
총수량	두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좌번호

은행명

담양군수 귀하

첨부서류 등	① 수의사 확인서 ② 세금계산서 ③ 처리비용 납부내역(계좌이체 내역) ④ 랜더링 처리확인서
-----------	--